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위원회규정

제 정 : 2007. 10. 10.

1차개정 : 2009. 3. 25.

2차개정 : 2010. 7. 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경영위원회는 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경영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장이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의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조(소집)**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한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의결사항)** ①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규정 및 약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 및 유가증권의 매매와 운용에 관한 사항
3.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대리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6.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7. 다른 내규에서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8.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경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그 일부를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사장 및 본부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보고사항)**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경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의결방법)** 경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8 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경영위원회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 및 본부장은 그 안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장 및 본부장은 제7조의 재적구성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9 조(관계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경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의사록)**① 의사담당부서장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분은 의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출석 또는 결석한 인원의 성명
3. 회의 사항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출석인원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비상임이사 선임일까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아래 내규상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

1.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규정」 제5조,
2.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규정」 제7조, 제16조 및 별표1-2,
3. 「신뢰성보험 보상규정」 제3조,
4. 「보상규정」 제25조,
5. 「회계규정」 제75조, 제111조,
6.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지침」 제5조,
7. 「단기 인수규정」 제1-7조, 제2-34조,
8. 「중장기 인수규정」 제1-5조, 제4-5조, 제4-7조, 제8-2조, 제10-2조,
9.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규정」 제1-4조,
10. 「신뢰성보험 인수규정」 제1-4조,
11. 「인수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12. 「채무감면요강」 제23조,
13.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인수요강」 제4조, 제26조

## 부 칙(1)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